

제342회 임시회
2015. 9. 11.(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9. 11.(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5년 8월 24일
- 회부일자 : 2015년 8월 25일

다. 상정일자 : 2015년 9월 2일

-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자활기업의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 향상,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활 활성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
- 기금의 자금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자활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 자금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안 제1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안 제1조 등)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의2(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의 내용)를 신설하여 충북지역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본 조항은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자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으로 타당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단, 보건복지부 「2015년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활기금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충북의 자활기금 조성총액은 2,550,242,085원이며, 2015년 지출현황을 보면, 비응자성사업 예산액이 77,000,000원으로 기금 총액의 3%수준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음. [별첨 참조]
 - 현재 자활기금 운용방식은 자금대여 사업의 경우 원금을 사용하되,

비용자성사업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 현재 금융권 평균 예금금리가 2%미만이고, 2015년도 6월30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서 수령한 자활기금 이자율이 1.55%인 점을 감안할 때, 2015년도 지출 예산도 원금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임.

※ **충북도 통합관리기금(신한은행)-자활기금 지급 이자율 : 1.55%**(2015. 6.30 기준)

- 현 시점에서, 안 제3조의2에 추가로 명시된 아래 사업 등의 경우, 규모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데, 이와 관련해 사업비 확보를 위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3조의2 추가 지원 사업**

6.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8.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

○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기금운용관(국장), 기금출납원(사무관)에 분임기금운용관(과장)을 추가로 두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타당함.

- 단, 분임기금운용관은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자활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융자금 6건, 비용자성 사업 4건, 전세자금대여 1건 수준으로 일부 사업이 추가되더라도 기금출납 건수가 많지 않은데,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별첨 참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그 밖에 오탈자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타당함.

※ **별첨**

충청북도 자활기금 현황

자활기금조성 현황(2015. 7. 31. 기준)

- 총 조성액 **2,550,242,085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75,770,000원
 - 정기예금(3건) 342,051,143원
 - 보통예금(1건) 152,420,942원
 - 융자금(8건) 480,000,000원

예치금 현황

구분		대상	예치금
정기예금	정기예금예치(2015.02.27-2015.08.27 1.50%)	200-202-520080	100,755,051
	정기예금예치(2015.05.07-2015.11.07 1.38%)	200-206-141590	41,296,092
	정기예금예치(2015.06.04-2016.12.04 1.31%)	200-207-508453	200,000,000
보통예금		100-000-117660	152,420,942

융자금 현황

구분	채무자	기업및사업단명	융자일	융자기간	잔액
계		6건			480,000,000
보은군	보은지역자활센터	착한농부사업단	2010.10.14	10년(2020.10.14)	70,000,000
보은군	보은지역자활센터	정이품한우사업단	2010.12.22	10년(2020.12.22)	50,000,000
청원군	청원지역자활센터	우렁각시	2011.04.27	10년(2021.04.27)	90,000,000
괴산군	괴산지역자활센터	침구사업단	2011.04.27	10년(2021.04.27)	70,000,000
보은군	보은지역자활센터	보은제면	2012.04.30	10년(2022.04.30)	100,000,000
충청북도	충북광역자활협회	충북광역자활센터	2013.05.30	3년(2016.05.30)	100,000,000

2015년 지출 현황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177,000,000	68,000,000	109,000,000	
비용자성사업	자활기업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	48,000,000	45,000,000	3,000,000	
	자활생산물 전시회	6,000,000	0	6,000,000	
	자활근로자 교육	16,000,000	16,000,000	0	
	자활사업 종사자 연찬회	7,000,000	7,000,000	0	
자금대여	전세 자금 대여	100,000,000		100,000,00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용관리에 관하여” 를 “운용관리에” 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로 한다.

2.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의 내용) 제3조제2호에서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이란 충청북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말한다.

1.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
2. 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3.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
6.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8.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지원
9.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

제4조제1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로, “예탁” 을 “예탁(豫託)”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비치하여야” 를 “갖추어 두어야”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 를 “따라” 로, “소재” 를 “주소” 로 한다.

제7조 중 “때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얻어야” 를 “받아야” 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3회까지(최장 6년)” 을 “최장 6년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환기관” 을 “상환기간” 으로, “이를 상환하지” 를 “상환하지”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유없이” 를 “사유 없이” 로, “아니한 때” 를 “아니한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한 때” 를 “사용한 경우” 로 한다.

제8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이차보전” 을 “이차보전(利差補填)”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개시” 를 “시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5호 중 “부외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기하기 위해” 를 “도모하기 위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촉될” 을 “위촉이 해제될”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금운용관” 을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출납원” 을 “분임기금운용관은 자활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 으로 한다.

제15조 중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을 “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기금의 <u>운용관리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운용관리에</u> ----- -----.</p>
<p>제3조(기금의 용도)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u> 3. <u>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u> 4. <u>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u> 5. <u>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지원</u>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3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u>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3. ----- ----- -----</p>
<p><신 설></p>	<p>제3조의2(<u>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의 내용</u>) 제3조제2호에서 “<u>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u>”이란 충청북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u> 2. <u>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u>

	<p><u>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u></p> <p>3. <u>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지원</u></p> <p>4. <u>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u></p> <p>5. <u>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u></p> <p>6. <u>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u></p> <p>7. <u>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u></p> <p>8. <u>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지원</u></p> <p>9. <u>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u></p>
<p>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u>의하여</u> 운용한다.</p> <p>②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u>의하여</u> 통합기금에 <u>예탁</u>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도지사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u>비치</u>하여야 한다.</p>	<p>제4조(기금의 관리) ① ----- ----- 따라 ----- -----.</p> <p>② -----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 --- 예탁(豫託)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갖추어 두어야 ----- -----.</p>
<p>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u>의거</u>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p>	<p>제5조(지원대상) ----- 따라 ----- -----</p>

<p>에 거주하거나 <u>소재</u>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략)</p>	<p>----- 주소 -----</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p> <p>-----</p> <p>-----</p> <p>-----</p> <p>-- 경우에는 -----</p> <p>--- 받아야 -----.</p>
<p>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 ② (생략)</p> <p>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u>3회까지(최장 6년)</u> 연장해 줄 수 있다.</p> <p>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u>상환기관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u> 아니한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p> <p>⑤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자금을 대여받은 후 <u>정당한 사유 없이</u>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p>	<p>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 <u>최장 6년까지</u> -----</p> <p>-----.</p> <p>④ -----</p> <p>-----, <u>상환기간</u>-----</p> <p><u>상환하지</u> -----</p> <p>-----.</p> <p>⑤ -----</p> <p>-----</p> <p>----- <u>경우에는</u> -----</p> <p><u>제2항에도 불구하고</u>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u>사유 없이</u> -----</p> <p>-----</p>

<p>이상 영업을 하지 <u>아니한 때</u></p> <p>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u>사용한 때</u></p> <p>⑥ (생략)</p>	<p>----- <u>아니한 경우</u></p> <p>3. -----</p> <p>-----</p> <p>----- <u>사용한 경우</u></p> <p>⑥ (현행과 같음)</p>
<p><u>제8조의2(사회보험료 지원)</u> (생략)</p>	<p><u>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u> (현행 제8조의2와 같음)</p>
<p><u>제9조(이차보전)</u> ① ~ 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u>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u>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p>	<p><u>제9조(이차보전(利差補填))</u>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u>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p>
<p><u>제11조(기금운용계획)</u>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u>개시</u>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당해</u>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p> <p>3. (생략)</p>	<p><u>제11조(기금운용계획)</u> ① -----</p> <p>----- <u>시작</u> -----</p> <p>-----.</p> <p>②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해당</u> -----</p> <p>-----</p> <p>3. (현행과 같음)</p>
<p><u>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u>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1. ~ 4. (생략)</p> <p>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p>	<p><u>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u> ① ---</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p>-----</p>

<p><u>의하는 사항</u> ② (생략)</p>	<p><u>회의에 부치는</u> ----- 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u>해촉될 수 있다.</u></p>	<p>제1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u>도모하기 위하여</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위촉이 해제될</u> -----.</p>
<p>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u>기금운용관</u>과 <u>기금출납원</u>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담당국장으로 하고, <u>기금출납원</u>은 자활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p>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u>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u> -----. ② ----- ----- <u>분임기금운용관은 자활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u> -----.</p>
<p>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u>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u>을 준용한다.</p>	<p>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 ----- ----- <u>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u>-----.</p>
<p>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6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p>

관계법령 발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26조의5 (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